

김포시 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제3776호
----------	--------

제출년월일 2026. 7. 8.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관내 시내·마을 버스정류소와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및 그 주변 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 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시민 편의 증진 및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조례의 적용범위 및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정류소등의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등(안 제5조 ~ 제8조)
- 라. 버스정류소 명칭의 사용(안 제9조)
- 마. 협력체계의 구축 등(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6. 5. 12 ~ 6. 1.(20일)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부서협의
 -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 나) 성별영향분석 : 원안 동의
 -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 경기도 버스관리과 및 버스정책과

김포시 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버스정류소와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및 그 주변 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 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선”이란 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2. “버스정류소”란 여객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이란 버스정류소에 설치된 부가적인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표지판

나. 노선도

다. 승강장

라. 의자

마. 승차대

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사. 그 밖에 정류소에 필요한 시설

4. “정차범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보도에 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승차대가 설치된 곳으로

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단,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10미터 이내인 곳

나. 도로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정차면이 설치된 경우 해당 정차면

5. “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이란 사용료를 내고 버스정류소의 표지판, 승차대, 노선안내도 및 차내 안내방송 등에 해당 정류소의 주된 명칭 또는 부가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포시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시내·마을 버스정류소 및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등(이하 “정류소등”이라 한다)과 주변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류소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류소등의 주변 보도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각 시설물이 고유의 목적에 맞춰 조화롭게 설치 및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류소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 ① 정류소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 교통상황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할 것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확보할 것

3. 「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공공성과 심미성을 고려할 것
 4. 버스정류소는 시민의 편의성 및 버스가 무리 없이 진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5. 버스정류소의 편의시설은 승하차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되, 시민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정보 확인을 위해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할 것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류소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 정차범위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버스를 타거나 내릴 때 방해하는 시설물
2. 승객이 접근하는 버스를 확인하는 것을 방해하는 시설물
3. 교통안전시설 이외의 시설물
4. 그 밖에 시장이 정차범위 내에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7조(현황조사 및 정비) ① 시장은 정차범위에 대한 시설물의 설치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통해 시민의 버스 승하차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주체와 협의를 통해 정비할 수 있다.

제8조(유지관리 및 개선사업 등) ① 시장은 정류소등의 기능을 상시 점검·정비하며, 손상된 시설물은 신속히 보수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장애정류소의 설치 등 시민의 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김포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버스정류소 명칭 사용) ① 시장은 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을 희망하는자와 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공개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용료는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④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시장은 정류소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과 정류소등 및 그 주변시설의 정비·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대중교통과
입 안 자	담당관·과장·소장 직위·성명	대중교통과장 박 준
	팀장 직위·성명	마을버스팀장 유 종 오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시설주사보 설 광 섭(☎548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3.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6. 오지·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7.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8.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하생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계산,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하생략)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2.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2. 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

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이하생략)